

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제청 및 심사진행 안내

1. 외부심사위원 제청 서류제출

가. 제출대상: 이번 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자 중 박사(석박사통합)과정

※석사과정은 외부심사위원 제청 의무 없음

나. 대학원 학칙 제34조(학위논문 심사)에 의거하여 박사(석박사통합)과정 심사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며, 외부심사위원(타교 전임교원 또는 전문인사) 1인 내지 3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.

다. 제출기간: 2023. 10. 13.(금) ~ 30.(월) 15시까지(심사자는 27일까지 학과에 제출)

라. 제출서류: (박사과정)학위청구논문 외부(초빙)심사위원 자격 확인서

마. 제출방법

- 1) 외부심사위원을 심사신청자가 섭외한 경우: 아래 표 심사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제출서류를 소속 학과(전공)사무실 제출
- 2) 외부심사위원을 소속 학과(전공)에서 섭외한 경우: 제출서류를 소속 학과(전공)에서 준비하므로 심사신청자가 제출할 서류 없음
- 3) 서식 다운로드: www.smu.ac.kr/grad/board/format.do?mode=view&articleNo=711647

구분	심사위원 자격	제출서류
1	국내·외 대학의 전임교원 (명예, 초빙, 석좌, 겸임 포함)	학위청구논문 외부(초빙)심사위원 자격 확인서, 해당 대학의 재직 증명서
2	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강의경력 또는 연구기관에서 근무경력 (전임연구원)이 통산 3년 이상인 자	학위청구논문 외부(초빙)심사위원 자격 확인서, 경력증명서 및 박사학위증 사본(또는 박사학위(졸업)증명서)
3	위 "심사위원 자격"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리 대학에 강의, 논문지도교수,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경력이 있는 자	학위청구논문 외부(초빙)심사위원 자격 확인서

2. 심사위원 제청 결과확인

가. 확인기간: 2023. 11. 15.(수) 10시부터

나. 확인사항

- 1) 확인경로: 샘플포털시스템 로그인→통합정보→학생기본→졸업→논문(대체)심사신청
- 2) 논문(대체)심사신청메뉴에서 아래 항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3) ①학위청구 논문 예비심사 위원 명단 확인: 석사과정 3인, 박사(석박사통합)과정 5인
※ 예비심사 위원이 본심사도 심사합니다.
- 4) ②예심일자 및 예심장소, 본심일자 및 본심장소 확인하여 심사받을 준비를 하고, 심사위원에 배부할 학위청구논문 예심 및 본심사 보고서 서식을 ③출력하여 예비심사에서 서식을 심사위원장용과 심사위원용을 구분하여 배부하여야 합니다.
▶서식 다운로드: www.smu.ac.kr/grad/board/format.do?mode=view&articleNo=710810
- 5) 심사위원 명단, 예심·본심 일자 및 장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소속 학과(전공)사무실에 문의하여야 함.

조회

학번/성명*

전공*

학번	성명	성별	학기	4	이수학기	4	다 전 제
과정구분	일반학생 본교생(석사)	소속					
학적상태		입학구분	신입학	국적			
최종변동		재입학일		전형			
지도교수		휴대전화		E-mail			

학위청구 논문(대체)심사 신청 정보

신청년도*

신청학기*

지도교수

구분 졸업논문

성적

총평점평균

교직

자격시험

종합시험 : 합격

외국어시험 : 합격

논문(대체)제목

(영문)

논문(대체)부제

(영문)

연구윤리*

준수서약

Y

연구윤리 수료증첨부

연구윤리 수료일자

2020-10-20

논문심사비

90,000

신청일자

2020-10-15

승인여부

Y

지도교수 지도비

0

예심일자

2020-11-24

예심장소

예심결과

연구등록비

0

본심일자

2020-12-01

본심장소

본심결과

④ 총납입금액

90,000

납입일자

⑤ 2020-10-16

가상계좌

은행

우리은행

예금주

학위청구 논문 예비심사 위원

No

구

사번

위원명

소속 대학교명

소속 학과명

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

1

외

111111111

위원명

소속 대학교명

소속 학과명

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

2

외

111111111

위원명

소속 대학교명

소속 학과명

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

3

외

111111111

위원명

소속 대학교명

소속 학과명

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

①

2023. 11. 15.(수) 10시부터 확정된 심사위원 명단을 상기 영역에서 확인.

11. 15.(수) 이전에 명단이 출력될 수 있으나, 소속 학과(전공)에서 수정될 수 있음.

심사위원 명단을 확인 후 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 서식을 위원당 1부씩 (심사위원장용, 심사위원용 구분) 심사장에서 심사위원단에 배부함.

보고서 출력

보

③ 력

보고서 출력

3. 심사경비 납부결과 확인

가. 납부기간: 2023. 10. 19.(목) 14시 ~ 10. 23.(월) 23시까지

나. 납부방법: 샘물포털시스템 로그인→통합정보→학생기본→졸업→논문(대체)심사신청에서 부여된 '④총납입금액'을 우리은행 가상계좌 납부

다. 납부 여부 확인기간: 2023. 10. 23.(월) 10시부터

라. 확인사항

- 확인경로: 샘물포털시스템 로그인→통합정보→학생기본→졸업→논문(대체)심사신청
- 논문(대체)심사신청메뉴에서 ⑤"납입일자"가 출력되면 납부가 확인된 것입니다.

마. 특기사항: 논문심사 취소에 따른 환불은 기 안내 되었던 [2023. 4. 20.(목)] 이전에 학과(전공)에 대학원교학팀으로 전자결재 요청 시 환불 가능함.

※ 2023. 10. 26.(목)까지 학과의 전자결재 접수분에 한하여 환불, 이후 요청사항은 환불 불가

4. 심사 진행 관련: 대면심사

가. 코로나19 대응 보건 안전수칙 준수

나. 참석자 상호간 거리 확보 및 손 소독 등

5. 학위청구논문 심사 진행 일정

기간	내용	비고
2023. 10. 10.(화) ~ 10. 17.(화)	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※논문심사비, 논문지도비(수료자), 연구등록비(수료자)를 입금 하여야 논문심사 신청이 완료됨.	신청자
2023. 10. 19.(목) ~ 10. 23.(월)	학위청구논문 심사경비 납부 ※ 10. 19.(목) 14시~ 10. 23.(월) 23시	
2023. 10. 13.(금) ~ 10. 30.(월)	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학과 승인 및 심사위원 제청 ※ 외부 심사위원에 관해서는 자격확인서 제출	학과
2023. 10. 31.(화) ~ 11. 14.(화)	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대학원위원회 선정 심의 대학원위원회 심의결과 학과 통보(특이사항 있을 시)	대학원교학팀
2023. 11. 15.(수) ~ 12. 11.(월)	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시행 ※ 원활한 논문 심사를 위하여 7일 이전 심사내용(논문 초안 등)을 심사위원에게 제공	학과
2023. 11. 27.(월) ~ 12. 15.(금)	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 제출	학과
2024. 1. 8.(월) ~ 1. 17.(수) ※ 예정	심사 합격자 학위청구논문 최종작성 인준 제본 제출	합격자

- ※ 논문심사위원 제청이 짧은 기간 내 진행되어야 하므로 신청자와 해당 학과는 심사신청 즉시 지도교수와 함께 심사위원 섭외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(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)에 의거하여 반드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번학기에 심사하고자 한다면 2023. 10. 17.(화)까지 심사 신청 하고, 2023. 10. 23.(월)까지 납입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6. 관련 규정

가. 고등교육법 시행령

제44조(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) ①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.

②학위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(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이상,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이상)이 행한다.

나.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
제5조(부정청탁의 금지)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.

10. 각급 학교의 입학·성적·수행평가·논문심사·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·조작하도록 하는 행위

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
- ※ 논문심사 및 지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금지함.

다. 대학원 학칙

제33조(지도교수) ①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우리 대학교 비전임교원, 강사, 타교 전임교원 및 전문인사로서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 경력자가 논문지도를 하고자 할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, 본교 전임교원과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.

③지도교수는 적절한 지도학생을 유지하며,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은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④생략

⑤지도교수는 학생이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 만약, 지도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지도교수는 2년간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34조(학위논문 심사) ①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의 자격은 (논문)지도교수와 동일하며,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이 제청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(석사 3인, 박사 5인)으로 구성한다. 단, 공동으로 논문을 지도하는 경우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지도교수 인원은 심사위원 총원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박사과정 심사위원에는 타교 전임교원 또는 전문인사 1인 내지 3인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학위논문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이루어지며,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심사를 받을 수 없다.

④심사의 통과는 석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2/3 이상의 찬성, 박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4/5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라.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

제49조(심사위원 제청) ①학과장(전공주임교수)은 소정기간 내에 심사신청자의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선정한 후 그 명단을 대학원위원회에 제청하여야 한다.

이때 학칙 제34조 1항 및 2항에 따른다.

②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배제한 전임교원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삭제

④예비심사와 본심사의 심사위원은 동일하다.

- 붙임 1. 학위청구논문 외부(초빙)심사위원 자격 확인서 서식 1부.
2. 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 서식 심사위원장용 및 심사위원용 각 1부.
3. 대학원 학과(전공)사무실 전화번호부 1부. 끝.

2023. 9.

대학원장
교육대학원장
통합심리치료(복지상담)대학원장
경영대학원장
문화기술대학원장
예술디자인대학원장